#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 안<br>번 호 | |
|---|---|

제안연월일 : 2025. 9.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건 명 | 의안번호 | 발의자 | 회부일 | 회의정보 |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201563 | 강대식의원 등 11인 | ’24.7.11. | 상정 | 제417회 국회(임시회)<br>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4.8.21.) |
| | | | | 소위 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br>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9.1)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208327 | 손명수의원 등 11인 | ’25.2.24. | 상정 | 제428회 국회(임시회)<br>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5.8.21.) |
| | | | | 소위 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br>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9.24.)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209503 | 손명수의원 등 19인 | ’25.4.2. | 상정 | 제428회 국회(임시회)<br>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5.8.21.) |
| | | | | 소위 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br>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9.24.)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9. 25.)는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조기 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57조제1항).

나. 시험일 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현행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이수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한편,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잃도록 하여 운전면허 취소 후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취소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함(안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23조제2항 신설 등).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통계를 작성·관리 및 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안 제62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시험일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수 없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3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를 “제23조제1항에”로, “취득한 자가”를 “취득한 사람이”로, “아니한 자”를 “아니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라 운전면허

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2조제3호 중 “제23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따른 취소는 제외한다)에”를 “제23조제1항에”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ㆍ제7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절차에”를 “절차와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상실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로 한다.

②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효력을 잃는다.

제57조제1항 본문 중 “3년의”를 “5년의”로 한다.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운수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및 대상,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표,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자의 시험 응시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 및 교육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서 신설> |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①---------- 사람은 ----------. 다만, 제3호에 따른 시험일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수 없다.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② ----------사람에게----------. |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 | 제9조(결격사유) ---------- 사람은 --- |

| | |
|---|---|
| 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 |
| 1.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1. ----------사람 |
| 2. 제23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4조제1호에 해당하여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제23조제1항에----------취득한 사람이 ----------아니한 사람 |
| 3.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 4.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4.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
| 제2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2조(청문)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제23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따른 취소는 제외한다)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 3. 제23조제1항에---------- |
| 4.·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① ----------. ---, ------ 제6호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삭 제> |
| 7의2. ~ 10. (생 략) | 7의2. ~ 10.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②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 |

| | |
|---|---|
| | 한 사람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효력을 잃는다. |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절차와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상실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
| 제57조(차량충당조건)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제57조(차량충당조건) ① ----------5년의----------.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62조의3(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

| | |
|---|---|
| | 관리와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br>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br>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운수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br>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 |

| | |
|---|---|
| | 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br>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및 대상,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표,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